

대전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127228 판결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대전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정(소송구조)

변론 종결2020. 9. 16.

판결 선고2020. 10. 2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975,864원과 그 중 30,486,714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4,502,6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 중 34,502,659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8. 10. 10. 피고 A과 피고 A이 C으로부터 받을 대출금과 관련하여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9. 10. 8.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 피고 A은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5. 11. 이자 연체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9. 9. 3. C에 30,486,714원(=원금 30,000,000원+이자 486,7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으로 545,600원이 발생하였으나, 미환급보증료 및 송달료 환급 등 합계 56,450원을 충당하여 현재 대지급 잔액금으로 489,150원이 남아있다.

3) 원고 소정의 연체 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19. 9. 3.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B은 친구인 피고 A에게 2016. 10. 14., 같은 달 24. 합계 237,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9. 3. 19. 피고 A과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카단52342호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6. 18. 피고 B이 위 경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7. 10. 피고 B에 대하여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위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0,975,864원(= 대위변제금 30,486,714원 + 대지급잔액 489,1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486,7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2.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3. 19.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6. 10.경 부담한 피고 B에 대한 237,000,000원의 채무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199호로 사기죄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피고 A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이 부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피고 A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A이 2019. 4. 25.부터 C에 대한 대출이자의 연체를 시작하여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233,000,00원(갑 제11호증의 7)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극재산은 주식회사 C에 대한 164,400,000원(=140,400,000원+24,000,000원), 피고 B에 대한 237,000,000원, 원고에 대한 30,000,000원(신용보증약정 원금), E 주식회사에 대한 26,126,910원 합계 457,526,910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라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 B의 악의

피고 A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B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 초과 및 사업상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2016. 10.경 피고 A에게 237,000,000원을 대여한 후 피고 A으로부터 위 대여금 및 약정 이자를 제때에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A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중에 피고 A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비록 금전 대여 당시에는 피고 A의 재력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 A에게 변제자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계약으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부족 상태가 심화되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피고 B이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마.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9. 16.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리금은 34,502,659원[=30,975,864원 + 2019. 9. 3.부터 2020. 2. 12.까지 이자 1,357,741원(=대위변제금 30,486,714원×연 10%×163/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2020. 2. 13.부터 2020. 9. 16.까지의 이자 2,169,054원(=대위변제금 30,486,714원×연 12%×217/366일)]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내에서 원고의 위 채권액인 34,502,659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은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50,000,00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34,502,659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위 인정 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길연

별지